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정순옥 의원 등 6명
- 발의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5. 12. 1.)

## 2. 개정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는 아동친화모니터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며,
- 놀이공간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놀이공간의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평하게 놀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안 제7조제2항, 제3항 신설)

## 4.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제5조 및 제31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정당한 휴식권을 포함한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11.20. 비준)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우리나라는 유니세프 어린이 웰빙지수(OECD 및 EU) 조사에서 2020년 38개국 중 21위였으나, 2025년 36개국 중 27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실질적인 정책에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